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87호
- 나. 제출자 : 신건택 의원 외 14명
- 다.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3일

2. 제안이유

-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로 되고 있음. 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사회의 빈부 격차가 줄고,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 단체 등은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협력적 관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요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 단체 등은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¹⁾로 되어 있음.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이에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사정간의 상생의 기반 조성에 부응하고자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조례 제정의 타당성

- 서울시는 2001년도부터 매년 일정 규모(‘15년도 36억원 편성, 21억원 지원)로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노동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도모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음.

〈 서울지역 노동단체 연도별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사업비	191	270	200	213	176	261	1,500	1,500	1,706	1,506	1,638	2,006	2,006	2,006	2,106

- 한편,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는 '92년 9월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 본부의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위탁 사업”(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15년 사업비 7억5천만원) 과, '02년 8월에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시설위탁 사업”(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6년 이전예정, '15년사업비 36억 3천만원) 을 각 각 민간위탁으로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
- 이 같이 서울시가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매년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매년 반영하여 관련조례(「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는 있으나, 그 동안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 규정으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사업지원 범위 등,

서울지역 노동단체의 발전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특히, 직접적인 근거 없이 수행되었던 일부 노동단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입법으로 보임.

다.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노동단체의 지원 대상(안 제3조)

- 제정안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 지역본부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각 서울지역본부가 이에 해당되며, 이는 한국노동운동을 주도해온 양대 노총이자 서울시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라. 노동단체에 대한 사업수행 지원 범위(안 제4조)

- 제정안은 양대 노총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상담 사업,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등,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으로 그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단체에 대한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은 노동단체로 하여금 발전적 사업을 도모하고 상호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보조금 교부시 서울시가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한 사항은 민간 주도의 노동단체에 대한 무조건적 예산 지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노동단체와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됨.

【참고자료】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비용추계

- 2015년 사업 예산 : 3,606,000천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비 : 2,106,000천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비 : 1,500,000천원
- 사업시작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1995년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2013년
- 지원대상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지원방법
 - 2015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예산 세부 내역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비 2,106,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 계		2,106,000	
노동조합 교육 사업	소계	335,000	
	숙박비	76,800	40×1박×80명×24회=76,800
	식비	96,000	50(1박2일)×80명×24회=96,000
	강당사용료	14,400	300×2일×24회=14,400
	강사비	14,400	300×2명×24회=14,400
	교통비	48,000	500×2일×2대×24회=48,000
	인쇄비	14,400	600×24회=14,400
	현수막	1,200	50×24회=1,200
	공동의류	67,200	35×80명×24회=67,200
	기타경비	2,600	문구대 외
법률지원 사업	소계	89,000	
	현장방문 교육비	8,400	강사비 300×24회=7,200 출장경비 50×24회=1,200
	노동법강좌 교육비	13,300	강사비 300×24회=7,200 교재비 10×350권=3,500
			교육평가회 6회 2,500
			현수막 50×2회=100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노무사 인력 배치비	25,000	100×250=25,000
	현장, 취약 계층 천막상담소 운영비	17,380	-신도림전철역
			노무사 상담비 157×27회×2명=8,478
			-영등포구청전철역
			노무사 상담비 157×27회×2명=8,478
			-장비배치424
	노동법률지원사업 워크숍	4,000	숙박비 20×15명×2회=600
			식비 50(1박2일)×15명×2회=1,500
			교재비 10×20권×2회=400
			차량비 400×2회=800
			기타경비 700
	상담사례집 발간	7,000	10×700권=7,000
	노동법률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비	4,920	리플렛 제작비 1,500원×500부×4회=3,000
			포스터 제작비 1,920원×500부×2회=1,920
공무지원 차량 대여	9,000	750원×12월=9,000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소계	57,000	
	이벤트비	25,000	음향기기 설치비 외 5,000
			가수 초청비(4명) 20,000
	인쇄비	3,500	포스터 제작비 2×1,000부=2,000
	홍보비	500	리플렛 제작비 1,500원×1,000부=1,500천원
			현수막 100×2개=200
	장소대여비	1,000	광고비(노동전문일간지) 300
			장소(의자/천막/책상)대관료
		주차비, 청소료	
	참가품	21,500	21,500원×1,000명=21,500천원
	기타경비	5,500	장기경연 트로피 외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소계	60,000	
	숙박비	4,000	50×20실×2박×2회=4,000
	식비	22,400	20×7식×80명×2회=22,400
	교통비	12,600	서울-목호 왕복
	선박비	20,000	목호-울릉도-독도
	기타경비	1,000	보험료 외
국제교류및	소계	139,000	
	중국 연길조선족자치주총공회 방문 외 4개국 (각 5박6일, 5인)	25,000	
ILO 총회참관	항공료	20,000	800×5명×5회=20,000
	기타경비	5,000	보험료 외
	베트남 하노이노총 방한/러시아 모스크바노총 방한	26,000	
	숙박비	7,200	대표단(1인1실) 통역,인솔(2인1실)
			120×6실×5박×2회=7,200
	식비	4,200	50×7명×6일×2회=4,200
	교통비	3,600	300×6일×2회=3,600
	항공료	2,800	200×7명×2회=2,800
	통역비	3,600	300×6일×2회=3,600
	기타경비	4,600	문화재 관람료 외
	ILO 총회참관및오스트리아노총 방문(6박7일,20인)	88,000	
	항공료	40,000	왕복/이코노믹
			2,000×20명=40,000
	숙박비	12,000	2인1실/2등급기준
			200×6박×10실=12,000

구 분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식비	12,000	100×6일×20명=12,000	
	기타경비	24,000	교통비, 입장료, 통역비 등	
	소계	40,000		
자원봉사활동	노사합동 농촌돕기 자원봉사 계	20,400		
	식비	12,000	10×4식×300명=12,000	
	교통비	8,000	500×2대×8회=8,000	
	현수막	400	50×8회=400	
	노사합동 시설방문 및 장애우 나들이 자원봉사 계	11,400		
	식비	3,000	10×300명=3,000	
	교통비	8,000	500×2대×8회=8,000	
	현수막	400	50×8회=400	
	노사합동 봉사활동 (장애우 행 사 2014. 12. 24) 계	8,200		
	식비	4,500	중식 뷔페 30×150명=4,500	
	현수막	50	실내용 1개	
	공연비	2,500	마술공연, 산타공연 등	
	기타경비	1,150	장애우 기념품 외	
	노사민정 워크숍	소계	12,000	
숙박비		2,400	30×80명=2,400	
식비		4,000	50(1박2일)×80명=4,000	
강당사용료		600	300×2일=600	
교통비		300	150×2일=300	
강사비		600	강사 2명	
인쇄비		1,000	자료인쇄 100권	
현수막		100	실내용 1개	
공동의류		2,800	35×80명=2,800	
기타경비		200	문구대 외	
노사민정 체육대회	소계	68,000		
	이벤트비	13,000	무대설치비 3,000 음향기기 설치비 3,000 진행강사비(주진행1/보조진행4 스텝도우미 10 인건비)=2,000 퍼포먼스 행사비(5명) =2,000 진행 준비물(기자재 및 소모용품비/특수효과) =3,000	
	참가품	40,000	40원×1,000개=40,000천원	
	인쇄비	1,500	리플렛 제작비 1×1,000부=1,000 초청장제작비 1×200부=200 경품권 제작비 300원×1,000부=300	
	식비	10,000	10×1,000명=10,000	
	기타경비	3,500	우승트로피 외	
	장학금 지원 사업	소계	1,306,000	
		장학금	1,300,000	
		장학금 운영비	6,000	통신비 및 장학증서 발급비